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4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5.

다. 회 부 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u>수의사</u> 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 ----- <u>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u> -----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u>사람</u>	1. ----- ----- -- <u>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병원은 수의사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비영리법인도 개설할 수 있고,¹⁾ 동물병원 관리 의무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나,²⁾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오직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부과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현행법상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 부과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人)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³⁾에게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

1)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부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수의사법」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과하고 있음.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